

물 품 관 리 규 정

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4월30일”을 “12월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매년 5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0호 서식”으로 하며, “매년 6월”을 “다음 연도 2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정기재물조사) ① 공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<u>4월30일</u>을 기준으로 실시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<u>매년 5월31일까지</u> <u>별지 제20호서식</u>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<u>매년 6월 말일까지</u>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</p>	<p>제44조(정기재물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12월31일</u>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별지 제20호서식</u> ----- -----<u>다음 연도</u> <u>2월</u>----- --.</p>